

대법원 2012. 7. 5 선고 2012다3424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상고인 강○○

서울 송파구 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백상

담당변호사 박●용, 정■영

피고, 피상고인 ○○○○○ 유한회사

서울 강남구 ○○

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더○○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×종, 박◇은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나42668 판결

판 결 선 고 2012. 7. 5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이인복